

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|
| 신고자 | ①성명 | | ②주민등록번호 | |
| | ③주소 | | ④이메일(전자우편) | |
| | ⑤전화번호 (주택) (휴대전화) | | ⑥거래 상대방 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|
| 공급자 (미발급자) | ⑦상호(법인명) | | ⑧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⑨성명(대표자) | | ⑩전화번호 | |
| | ⑪소재지 | | | |
| 신고 내용 | ⑫거래일자 | | ⑬거래가액 | |
| | ⑭현금지급일 | | ⑮미발급금액 | |
| | ⑯품목 | | ⑰수량 | ⑱단가 |
| | ⑲거래증명 | | | |
| | ⑳그 밖의 참고사항 | | | |

※ 신고대상 업종은 뒤쪽 참조

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3제4항 및 제5항,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제4항 및 제5항,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4제1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
지방국세청장 귀하
국세청장

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|
| 첨부서류 | 계약서, 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| 수수료 없음 | | |
| 포상금 지급계좌 | 은행 | 지점 | 계좌번호 | |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.
2.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3. "⑥ 거래상대방여부"란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(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)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4. "⑦~⑩ 공급자(미발급자)"란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. 추가사항은 "㉔ 그 밖의 참고사항"란에 적습니다.
 - 신고대상 공급자(미발급자)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열거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.
 -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(세금)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5. "㉔ 그 밖의 참고사항"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※ (참고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

| 구 분 | 업 종 |
|--------------|--|
| 1. 사업서비스업 | 변호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행정사업 |
| 2. 보건업 |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일반의원(일반과,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일반외과, 정형외과, 신경과, 정신건강의학과, 피부과, 비뇨기학과, 안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), 기타의원(마취통증의학과, 결핵과, 가정의학과,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)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, 앰블런스 서비스업 |
| 3. 숙박 및 음식점업 | 일반유희 주점업(「식품위생법 시행령,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업업을 포함한다), 무도유희 주점업,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, 출장 음식 서비스업,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(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), 숙박공유업 |
| 4. 교육 서비스업 | 일반 교습 학원, 예술 학원,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, 운전학원,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,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,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),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컴퓨터학원, 그 외 기타 교육기관 |
| 5. 그 밖의 업종 | 골프장 운영업, 골프연습장 운영업,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, 예식장업,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, 산후조리원,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, 피부미용업, 손·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,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, 마사지업(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),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(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,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, 의류 임대업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(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),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,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, 전세버스 운송업, 가구 소매업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 기구 소매업, 페인트·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, 안경 및 렌즈 소매업,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,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, 악기소매업,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, 체력단련시설 운영업, 묘지분양 및 관리업,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, 가전제품 소매업,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독서실 운영업(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), 두발 미용업,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, 신발 소매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의복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·소프트웨어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, 건강보조식품 소매업, 자동차 세차업, 벽지·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, 공구 소매업,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, 중고가구 소매업,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, 모터사이클 수리업, 가전제품 수리업,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, 가죽·가방 및 신발 수리업, 게임용구·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, 구두류 제조업, 남자용 겔옷 제조업, 여자용 겔옷 제조업,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(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), 시계·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,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, 의복 및 기타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,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, 백화점, 대형마트, 체인화편의점,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, 서적,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, 곡물,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, 육류 소매업, 자동차 중개업, 주차장 운영업,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, 통신장비 수리업,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,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,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, 여행사업,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, 실내 경기장 운영업, 실외 경기장 운영업, 스키장 운영업,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, 수영장 운영업, 볼링장 운영업,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,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서비스업, 기념품,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, 사진 처리업, 낚시장 운영업,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|
| 6. 통신판매업* | 전자상거래 소매업,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, 기타 통신판매업 *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|

비고: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
※ 신고서의 처리

1.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- 공급자(미발급자)가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 - 신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.